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30.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11. 1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3. 11. 20.

다. 상정일자: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23. 11. 3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가. 제안이유

구립예술합창단 단원의 나이 자격 등에 대한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단원의 자격 중 합창단원 및 실버합창단원의 나이 수정 (안 제7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권하나)

- 동 조례 개정안은 2023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각종 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되는 추세와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에 맞춰 구립예술합창단원의 나이 자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 조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1항제1호에 기존 합창단원의 구성에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의 구민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구민으로 구성한다고 수정하였음.
- 또한, 안 제7조제1항제2호의 실버합창단은 만 56세 이상 만 75세 이하의 구민으로 구성하는 것을 61세 이상 75세 이하의 구민으로 구성한다고 수정하였음.
- 현재 노인 연령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임. 그러나 그간 의학 기술의 발달 등으로 노인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고 노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나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평균 72.6세로 나타나기도 했음.

[표 1] 노인 연령 기준 현황

구 분	내 용	연령기준
사회보장	주택연금	55세 이상
	농지연금(노후생활안정자금)	60세 이상(2022년)
	노인일자리사업	60세 또는 65세 이상
	국민연금(노령연금)	65세 이상(2033년)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경로우대제도	65세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고용	고령자 정의	55세 이상
	근로자의 정년	60세 이상
	육체노동의 가동연한 (대법원판례)	65세 까지
주관적 기준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노인실태조사)	평균 70.5세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21년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

- 따라서, 노인에 대한 연령 기준이 높아지는 사회적 추세와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에 맞춰 구립예술합창단원의 나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2019년 동 조례를 개정하여 실버합창단을 신설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는 바, 실버합창단에 노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기존 구립합창단 외에 실버합창단의 신규 창설 등 구립예술합창단으로의 규모의 확대도 좋으나 각각의 합창단 운영 내실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표 2] 마포구립예술합창단 현황

(2023. 7. 7. 기준)

구 분	구립합창단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실버합창단
나이자격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	마포구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 및 구 소재 학교 학생	만 56세 이상 만 75세 이하
창단일	2003.5.27.	2004.12.13.	미창단
단원	28명(정원 60명 이내)	39명(정원 60명 이내)	
단장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2023년 예산	69,918천원	69,550천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